

#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793호
-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30일
-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4일

## 2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를 반환하기 위한 시민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, 2009년 이후 일본, 영국, 프랑스, 카자흐스탄 등 해외방문을 통해 현지조사 등 해외 문화재 찾기 지원활동을 추진하여 왔음.
- 그러나 해외 소재 문화재 반환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 간 외교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동 조례의 유지 필요성이 낮아 폐지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」를 폐지함.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 
「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 : 규제사무 없음.
- (2) 조직담당관(위원회) : 해당 없음.
- 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 : 해당 없음.
- 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 : 평가 제외
- (5) 여성가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 : 해당 없음.
- (6) 갈등조정담당관(공공갈등진단) : 의견 없음.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15.8.27. ~ 9.16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.
- (3) 비용추계 등 자료 : 해당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폐지조례안 개요

- 동 폐지조례안을 통해 폐지하고자 하는 「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」는 2009년 1월 21일 부두완 의원의 발의로 제정되어 같은 해 3월 18일 공포·시행된 조례로

〈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〉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총 12개조에 걸쳐 위원회의 기능, 구성, 회의 운영, 비용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
#### <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개요>

조 제목	내 용
제1조(목적)	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제2조(기능)	해외 소재 문화재 실태파악, 반환 관련 활동 지원 등
제3조(구성)	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 포함 40명 이내, 실무위원회, 분과위원회 운영
제4조(위원장의 직무)	위원회 대표, 위원회 업무 통할 등
제5조(위원의 임기)	위촉위원 2년, 보궐위원 잔임기간, 공무원인 위원 재직기간
제6조(위원의 해촉)	임기만료 전 해촉 가능한 사유
제7조(회의)	위원장 소집, 과반수 출석 개회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, 회의록 작성·비치
제8조(간사)	간사 1명, 시 역사문화재과장 당연직
제9조(의견청취)	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회의 출석,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 요청 가능
제10조(수당 등)	회의 참석 위원, 전문가 등에 수당, 여비, 경비 지급 가능
제11조(운영세칙)	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.
제12조(위원회의 지원)	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지원 가능

## 나. <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> 개요

- <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>는 2009년 3월 18일 제정·시행된 「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」에 의거해 2009년 4월 6일 설치되어

해외 소재 문화재 실태파악, 반환 관련 법률자문 및 활동 지원 등을 위해 2009년 평양방문, 일본, 영국, 프랑스, 카자흐스탄 등 해외 현지조사를 진행하였으며, 2011년 1회, 2012년 4회 등 총 5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나, 2013년 7월 이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음.

### <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위촉현황>

구분	제1기	제2기
위촉기간	2009.4.17. ~ 2011.4.16.(2년)	2011.7.1. ~ 2013.6.30.(2년)
위원수	34명	31명
위촉내역	시의원 : 13명 종교계 : 5명 전문가 : 4명 학 계 : 7명 언론계 : 3명 기 타 : 2명	시의원 : 8명 종교계 : 7명 전문가 : 4명 학 계 : 7명 언론계 : 5명 기 타 : 2명
위촉배경	<조선왕조이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> 위원장 부두완 의원 제안	<해외문화재 찾기 특별위원회> 위원장 문상모 의원 재구성 제안

### <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활동실적>

- 문화재 환수를 위한 평양방문('09.5.18. ~ 5.28.) : 평양 및 북한의 주요 문화유적지 답사 등
- 해외 현지조사('09.10.27. ~ 11.9.) : 일본, 영국, 프랑스, 카자흐스탄 방문
- 위원회 개최 : 총 5회('11년 1회, '12년 4회), 분과위 구성,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등

## 다. 위원회 폐지 계획

- 서울혁신기획관(민관협력담당관)이 「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해 실시한 2014년 위원회 운영평가와 그에 따른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계획(2015.6.11. 행정1부시장 방침)에 의하면

서울시는 2012년 문화재청 산하 <국외소재 문화재재단> 설립 이후 <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>가 활동하지 않고 있으므로,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」 또한 폐지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였음.

###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

제13조(위원회 활동 점검 등) ① 시장 등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시장 등은 위원회 운영의 시정·보완 및 통·폐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
2. ~ 5. (생략)

제14조(위원회의 통합·폐지) 시장 등은 위원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.

1.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
2.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
3.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
4.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
5.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

## 라. 종합검토의견

- 해외소재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사항은 외교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며

2012년 7월 27일 문화재청 산하에 <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>와 설치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<국외소재 문화재재단>이 설립, 운영 중이어서

2013년 이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<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>를 계속 존치, 운영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.

- 또한 2013년 2억원, 2014년 1억원의 “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운영” 예산이 편성되었으나

문화체육관광본부는 “문화재청 산하 <국외소재 문화재재단>이 설립되어 국가사업으로 <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>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위원회 개최 및 활동 실적이 없다”는 이유로 전액 불용처리하였고

이에 대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2015년 이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음.

- 2013년 이후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한 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와 위원회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부합하는 조치라 판단됨.

마. 참고자료 : 서울시 위원회 현황(2014년 말 기준)

○ 연도별 현황

(단위 : 개)

구 분	'08년말	'09년말	'10년말	'11년말	'12년말	'13년말	'14년말
위원회수	122	116	113	103	127	136	148
증 감	△11	△6	△3	△10	24	9	12

※ '14년 증감내역 : 신설 11개, 누락 3개, 정비 2개

- 누락은 기 설치되어 있었으나, 전수조사 시 누락되었던 위원회를 의미함.

○ 실·본부·국별 위원회 현황

(단위 : 개)

계	서울혁신기획관	시민소통기획관	여성가족정책실	감사관	평생교육정책관	정보기획단	도시공간개선단	기술심사담당관	기획조정실	경제진흥본부	복지건강본부	도시교통본부	문화체육관광본부	기후환경본부	행정국	재무국	마곡사업추진단	도시안전본부	도시재생본부	도시계획국	주택건축국	푸른도시국	소방재난본부	사업소
148	10	3	6	4	8	1	2	2	15	16	11	6	8	4	11	5	1	8	4	6	4	2	3	8

○ 소관 상임위원회별 현황

(단위 : 개)

계	행정자치위원회	기획경제위원회	환경수자원위원회	문화체육관광위원회	보건복지위원회	도시안전건설위원회	도시계획관리위원회	교통위원회
148	39	32	10	14	17	13	17	6

○ 위원 중복위촉 현황

(단위 : 명)

구 분	계	2개	3개	4개	5개	6개
위촉직 전체	318	228	54	20	11	5
(시의원)	(45)	(22)	(13)	(7)	(2)	(1)

○ 위원회 개최현황

(단위 : 개)

계	미개최	1회	2회	3회	4회	5회 이상 ~50회 미만	50회 이상 ~100회 미만	100회 이상
148개 1,463회	15	25	16	21	10	54	6	1
(100%)	(10.1%)	(16.9%)	(10.8%)	(14.2%)	(6.8%)	(36.4%)	(4.1%)	(0.7%)

○ 미개최 위원회 : 15개 위원회

공동구협의회, 교통위원회,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, 도로명주소위원회, 문화재찾기 시민위원회, 물류정책위원회, 분쟁조정위원회, 산업·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, 시장분쟁조정위원회,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, 주거복지위원회, 주민투표심의회,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, 택시정책위원회, 평생교육협의회

○ 정비대상 : 148개 위원회 중 19개

구 분	정 비 계 획			
	계	폐 지	통.폐합	비상설화
총 계	19	7	3	9
조 례 개 정	10	2	3	5
법 령 개 정 건 의	8	4	-	4
방 침	1	1	-	-

※ 법령 개정 건의 : 폐지 4(중앙부처 법령 개정과 병행하여 폐지 1,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후 위원회 폐지 3), 비상설화 4(법령상 임의규정을 삭제하고, 사도 실정에 맞게 암기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건의)

○ 조례 개정 : 2개 위원회 폐지

위 원 회 명	설치근거	정 비 사 유	정 비 방 안
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	조례 (강행)	'12년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설립 이후 본 위원회 미활동 (최근 3년간 회의개최실적 4-0-0)	· 위원회 폐지 - 위원회 조례 폐지
지역균형발전 위원회	조례 (강행)	특별법 제정 시행 등에 따라 심의안건이 도시 재정비위원회 소관사항만 예정되어 있는 바, 설치·운영 실효성이 없어진 본 위원회 폐지 필요 (최근 3년간 회의개최실적 6-6-1)	· 위원회 폐지 - 설치·운영 규정 삭제

○ 법령 개정 건의 : 4개 위원회 폐지

위 원 회 명	설치근거	정 비 사 유	정 비 방 안
소방특별조사 대상선정위원회	법령 (임의)	중앙부처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폐지예정인 바, 본 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시 자문단으로 구성·운영 필요 (최근 3년간 회의개최실적 2-1-1)	· 위원회 폐지
대부업관계기관 협의회	법령 (강행)	민생침해근절 민관대책협의회를 통해 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, 운영실적 등을 감안할 때 본 위원회 폐지가 바람직한 바 법령 임의규정화 건의 필요 (최근 3년간 회의개최실적 1-0-0)	· 법령 설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건의 · 법령 개정 후 위원회 폐지
분쟁조정위원회	법령 (강행) 조례 (강행)	위원회 설치('95년도) 이후 운영실적이 없으며, 위원회 기능 및 운영실적 등을 감안할 때 위원회 폐지가 바람직한 바 법령 임의규정화 건의 필요 (최근 3년간 회의개최실적 없음)	"
평생교육협의회	법령 (강행) 조례 (강행)	지자체 실정에 맞추어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임의규정화 필요 (최근 3년간 회의개최실적 0-1-0)	"

○ 방침 : 1개 위원회 폐지

위 원 회 명	설치근거	정 비 사 유	정 비 방 안
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	조례 (임의)	법령상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인 바, 본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거나, 본 위원회를 폐지하고 안전발생시 자문단을 구성·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(최근 3년간 회의개최실적 1-2-0)	· 조례상 설치규정이 임의규정인 바 방침으로 폐지